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297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 : 윤영석 • 박덕흠 • 김태호

고동진 · 엄태영 · 곽규택

조경태 · 정동만 · 최보윤

최형두 의원(10명)

제안이유

건설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공동체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양질의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기에 골재 품질검 사 및 품질향상 관련 연구에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골재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골재를 공급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 분 근거가 불비되어 있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화가 필요함.

한편, 공유수면 및 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 골재채취 허가를 관장하는 법률과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수입을 관장하는 법률이 상이 하여 수입의 원인에 부합한 적재적소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 함에 따라 허가권한을 가진 자의 의지에 반해 정책수단이 결여되어 의지만으로는 양질의 골재수급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

이에 공유수면 및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함에 따른 수입 중 일부의 집행을 골재채취허가 법률로 이양하여 골재수급 안정과 주변 환경보

전, 민원해소 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함.

또한, 국내 골재 수급 환경은 과거 하천·바다 등에서 채취하는 천연골재 위주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암석을 선별·파쇄하여 골재를 제조하는 자원의 순환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어 골재생산을 위한 암석 등의 수급이 매우 중요함.

하지만 최근 건설현장의 공사가 감소하고 있고, 발주자 또는 발주청에서는 건설공사 공기 등을 이유로 암석 등을 단순 매립·성토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암석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건설공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암석자원을 선별·파쇄 골재원으로 가급적 활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연환경 훼손 예방, 국토자원의 보전 및 골재수급의 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현행 규정은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있으나, '품질검사를 받아 품질기준에 미달된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1항제8호의3 신설).
- 나.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시 골재채취에 따른 하천점 용료 및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수입 중 일부를 골재채취허가법

률로 이양하여 허가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34조의3, 제34조의4제2항 신설).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연구를 위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4 제8항 신설).
- 라. 골재 공급원의 고갈 및 축소 등에 따라 수급 여건이 변화하고 있 어 선별·파쇄 암석자원에 대한 골재용으로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5).

법률 제 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 재를 공급한 경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를 "제33조, 제34조의4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로 한다.

제22조의4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품질검사의 실시 및 골재 품질향상 연구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가 신청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3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하천법」 제37조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하천점용료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1. 골재채취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태계보전 및 복원 등 자연환경 보호 사업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지역 주민 등의 소득증대, 생활안정, 생활환경 개선, 어업보호 및 복리증진 등 지원사업
- 3. 기타 골재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로, "발주청이"를 "발주자 및 발주청이"로,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에 순성토를 할 수 있는 토석이 없는 경우
- 2. 암석을 사토하는 것이 순성토 하는 것보다 해당 공사의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경우
- 3. 암석을 사토하는 것이 순성토 하는 것보다 국토환경을 훼손하게

하는 경우

- 4. 사토하는 암석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
- 5. 사토하는 암석이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골재용 암석을 사토할 때에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단지관리비 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34조의4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또는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경우(이 법 시행 전 지정된 예정지 또는 골재채취단지를 연장하여 지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터 적용한다.
- 제4조(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자 및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	
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	
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	
소하여야 한다.	
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8의3.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
	<u>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u>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	
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	

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 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 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 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 단지는 제외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 에는 시 · 도지사를 말한다. 이 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 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 <u>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u>}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1. ~ 2. (생 략)
- ② ~ ⑥ (생 략)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 (7) (생 략)

<신 설>

,
, 제33조, 제34조의4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
,
·.

- 1. ~ 2.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7) (현행과 같음)
 -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품질검사 실시 및 골재 품질향 상 연구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 ① -----에서 골재를 채취하는자로부터 골재채취단지의 조사・환경보 전 또는 행정절차 이행 등 단 지관리업무에 드는 비용(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② (생략)
- 1. ~ 2. (생략)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서의 주변 지역 환경보호, 어 업보호 등 지원사업.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유수 면 점용료 · 사용료를 사용하 여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4. (생략)
- ③ ~ ④ (생 략)

---. 다만,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 로 구성된 공동체가 신청에 의 하여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제외 한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 4. (현행과 같음)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골재채 취단지의 경우「하천법」 제37 조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 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사항은 제2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때부터 적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및 감면에 관한 특례) 골재채 및 감면에 관한 특례) <u>①</u> (현행 취단지의 경우「하천법」 제37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하천법」 제37조 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하천점용료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한다.

- 1. 골재채취로 인한 주변지역의생태계보전 및 복원 등 자연환경 보호 사업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서의 주변지역 주민 들의 소 득증대, 생활안정, 생활환경

<신 설>

는 토석의 처리) ①「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 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 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 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골재용 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 는 경우

<u><</u>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개선, 어업보호 및 복리증진 등 지원사업

3. 기타 골재채취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 는 토석의 처리) ①「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u>발주자 및「건설기술진흥법」</u> 제2조제6호에 ---- 발주자 및 발주청이 ----------다음 각 호의 경 <u>우 외에는 골재용으로 활</u>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

- 로미터 이내에 순성토를 할 수 있는 토석이 없는 경우
- 2. 암석을 사토하는 것이 순성 토 하는 것보다 해당 공사의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경우
- 3. 암석을 사토하는 것이 순성 토 하는 것보다 국토환경을 훼손하게 하는 경우
- 4. 사토하는 암석을 다른 사업 에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
- 5. 사토하는 암석이 골재의 품 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생략)

②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골 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제 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을 검토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6.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골재용 암석을 사토할 때에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